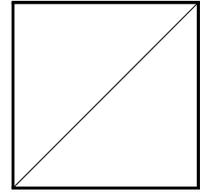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7 호	보 고 사 항
보 고 연 월 일	2020. 12. 22. (제 22 차)	

'일반기업회계기준 2020 연차개선' 개정결과 보고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12. 22.

1. 보고주문

'일반기업회계기준 2020 연차개선'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

2. 제안이유

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'일반기업회계기준 2020 연차개선'을 의결('20.10.16. 의결)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①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 규정의 명확화(문단 25.7)

- **(중전)** 현행 제25장 문단 25.7은 주요 경영진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, 이는 일반적으로 기준서가 관련 규정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는 방식과 상이함
- **(개정)** 주요경영진 보상 총액과 (세부)분류별 금액에 관한 공시 모두가 공시 생략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, 서술 방식을 다른 기준서와 일관되도록 개정함
 - 문단 25.7에서 공시 생략을 허용하기 보다는 공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구 수정

② 중간재무보고 비교표시 면제 명확화(문단 실29.14와 사례6)

- **(중전)** 현행 제29장 문단 실29.14에서는 직전 연도 동일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, 비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면제 규정이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명확
 - 직전 연도 중간기간에 손익계산서 미작성 기업은 대부분 동일 기간의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도 미작성할 것이나, 비교 표시 면제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, 재무제표 작성 시 혼란이 있었음

- **(개정)** 직전 연도 동일 중간기간에 대한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비교 표시 면제 규정(실29.14)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
- ③ 관계기업, 공동지배기업,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특례 회계처리 명확화 (문단 문단 31.5, 31.6)
- **(중전)** 현행 제31장 문단 31.5, 31.6에서는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 면제 특례를 적용할 경우, 해당 주식을 원가로 측정하는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 불명확하고,
 -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해당 자산 측정 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해당 투자자산을 측정하고 있음
 - **(개정)**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,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
 - ① 취득원가(손상차손 누계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)와 ② 제6장 금융자산·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함을 명확히 함

나. 시행일

- '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, 조기 적용 가능
- 제29장의 문단 실29.14와 사례6은 이미 실무에서 적용하던 방식으로 실무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,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

다.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

- 종전 실무해석상 논란소지가 해소되고 경제적 실질을 더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, 비교가능성, 이해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개정경과

- 2020. 8. 28. 개정 공개초안 의결(회계기준위원회)
- 2020. 9. 7. ~ 2020. 10. 6.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(금융감독원 등)
- 2020. 10. 16. 회계기준위원회 의결

나.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보고(2020.12.16.)

다. 관련법규

<별지>

일반기업회계기준 2020 연차개선

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

의결 2020. 10. 16.

내 용

일반기업회계기준 2020 연차개선

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	6
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	7
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	9
시행일 및 경과규정	10

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

특수관계자 공시

문단 25.7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.

- 25.7 기업은 문단 25.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함께 다음의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하거나, 한다. 다만, 이 보상에 관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.
- (1) 단기종업원급여
 - (2) 퇴직급여
 - (3) 기타장기급여
 - (4) 해고급여
 - (5) 주식기준보상

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

실29.14와 사례 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.

실29.14 ‘중간재무제표’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와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(손익계산서에 대한관련되는 주식사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. 이 경우, 중간재무제표의 ‘작성’은 법규 등의 요구에 의해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,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.(사례 6 참조)

- (1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및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, 즉 직전회계연도(20x2년)의 중간기간(2분기) 및 누적중간기간(반기)과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(2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 및 ~~크 직전~~ 누적중간기간(1분기)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, 즉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중간기간(2분기) 및 누적중간기간(반기)과 손익계산서와 비교표시한다.
- (3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~~크 직전~~ 누적중간기간(20X2년 1분기)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중간기간(2분기)과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과 손익계산서와는 비교 표시한다.

(4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(반기)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사례 6.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

F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중간기간은 3개월(분기)단위로 정하여진다. F사가 20X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X3년 2분기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경우,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기간과 비교표시하는 방법은?

<손익계산서>

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		비교 표시 여부	
20X2년 1분기	20X2년 반기	20X2년 2분기	20X2년 반기
X	X	비교 표시 <u>아니할 수 있음</u>	비교 표시 <u>아니할 수 있음</u>
O	O	비교 표시함	비교 표시함
X	O	비교 표시 <u>아니할 수 있음</u>	비교 표시함

<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>

<u>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</u>	<u>비교 표시 여부</u>
<u>20X2년 반기</u>	<u>20X2년 반기</u>
X	비교 표시 <u>아니할 수 있음</u>
O	비교 표시함

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

문단 31.5, 31.6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긋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다.

- 31.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'금융자산·금융부채'의 제2절 '유가증권'의 문단 6.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.
- 31.6 관계기업~~및~~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.
- (1) 취득원가. 다만, 제6장 '금융자산·금융부채'의 제2절 '유가증권'의 문단 6.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.
 - (2) 제6장 '금융자산·금융부채'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

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

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'시행일 및 경과규정(2020. xx. xx)'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. 새로운 문구는 밑줄을 그었다.

시행일 및 경과규정(2020. xx .xx)

시행일

-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(2020년)에서는 문단 25.7, 31.5, 31.6을 개정하였다. 이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,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.

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

(현행) 일반기준 제25장	(최종안) 일반기준 제25장
<p>25.7 기업은 문단 25.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총액과 <u>함께</u> 다음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 <u>하거나, 이 보상에 관한</u>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(1) 단기종업원급여 (2) 퇴직급여 (3) 기타장기급여 (4) 해고급여 (5) 주식기준보상</p>	<p>25.7 기업은 문단 25.6에 추가하여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과 <u>다음의</u> 각 분류별 금액을 공시한다. <u>다만, 이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(1) 단기종업원급여 (2) 퇴직급여 (3) 기타장기급여 (4) 해고급여 (5) 주식기준보상</p>

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 중간재무제표

(현행) 일반기준 제29장	(최종안) 일반기준 제29장
<p>실29.14 ‘중간재무제표’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<u>손익계산서(손익계산서에 대한 주석사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</u>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. 이 경우 중간재무제표의 ‘작성’은 법규 등의 요구에 <u>의해</u>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,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.(사례 6 참조)</p> <p>(1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<u>누적중간기간(반기)</u>을 대상으로 하는 <u>손익계산서</u>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(2분기 및 반기)과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(2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<u>누적중간기간(반기)</u> 및 그 직전 <u>누적중간기간(1분기)</u>을 대상으로 하는 <u>손익계산서</u>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, 즉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<u>중간기간(2분기)</u> 및 <u>누적중간기간(반기)</u>과 비교표시한다.</p> <p>(3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<u>누적중간기간(반기)</u>을</p>	<p>실29.14 ‘중간재무제표’에 따라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<u>손익계산서와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(관련되는 주석사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</u>는 다음과 같이 비교표시한다. 이 경우, 중간재무제표의 ‘작성’은 법규 등의 요구에 <u>따라</u>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, 괄호 안에 표시되는 회계연도 및 중간기간은 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기간이 3개월 단위로 정하여지며 20X3년 2분기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시하는 것이다.(사례 6 참조)</p> <p>(1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<u>누적중간기간(반기)</u> 및 <u>1분기를</u> 대상으로 하는 <u>손익계산서</u>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, 즉 <u>직전회계연도(20X2년)의 중간기간(2분기) 및 누적중간기간(반기)</u> <u>손익계산서와</u> 비교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(2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<u>누적중간기간(반기)</u> 및 <u>1분기를</u> 대상으로 하는 <u>손익계산서</u>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, 즉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<u>중간기간(2분기)</u> 및 <u>누적중간기간(반기)</u> <u>손익계산서와</u> 비교표시한다.</p>

(현행) 일반기준 제29장	(최종안) 일반기준 제29장																								
<p>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(20X2년 1분기)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중간기간(2분기)과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과는 비교 표시한다.</p> <p>(4) <신설></p>	<p>(3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는 작성하였으나 20X2년 1분기를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중간기간(2분기)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 손익계산서와는 비교 표시한다.</p> <p>(4)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한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(반기)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를 비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사례 6.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</p> <p>F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중간기간은 3개월(분기)단위로 정하여진다. F사가 20X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X3년 2분기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기간과 비교 표시하는 방법은?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93 1861 802 2067"> <tr> <th colspan="2">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여부</th> <th colspan="2">비교 표시여부</th> </tr> <tr> <th>20X2년 1분기</th> <th>20X2년 2분기</th> <th>20X2년 1분기</th> <th>20X2년 2분기</th> </tr> <tr> <td>X</td> <td>X</td> <td>비교 표시</td> <td>비교 표시</td> </tr> </table>	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여부		비교 표시여부		20X2년 1분기	20X2년 2분기	20X2년 1분기	20X2년 2분기	X	X	비교 표시	비교 표시	<p>사례 6. 중간재무제표의 비교 표시방법</p> <p>F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중간기간은 3개월(분기)단위로 정하여진다. F사가 20X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20X3년 2분기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누적중간기간(반기)을 대상으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경우, 직전 회계연도(20X2년)의 동일기간과 비교 표시하는 방법은?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손익계산서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0 1861 1412 2067"> <tr> <th colspan="2">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</th> <th colspan="2">비교 표시 여부</th> </tr> <tr> <th>20X2년 1분기</th> <th>20X2년 2분기</th> <th>20X2년 1분기</th> <th>20X2년 2분기</th> </tr> <tr> <td>X</td> <td>X</td> <td>비교 표시</td> <td>비교 표시</td> </tr> </table>	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		비교 표시 여부		20X2년 1분기	20X2년 2분기	20X2년 1분기	20X2년 2분기	X	X	비교 표시	비교 표시
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여부		비교 표시여부																							
20X2년 1분기	20X2년 2분기	20X2년 1분기	20X2년 2분기																						
X	X	비교 표시	비교 표시																						
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		비교 표시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
20X2년 1분기	20X2년 2분기	20X2년 1분기	20X2년 2분기																						
X	X	비교 표시	비교 표시																						

(현행) 일반기준 제29장				(최종안) 일반기준 제29장			
		아니할 수 있음	아니할 수 있음			아니할 수 있음	아니할 수 있음
○	○	비교 표시함	비교 표시함	○	○	비교 표시함	비교 표시함
X	○	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	비교 표시함	X	○	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	비교 표시함
				<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>			
				20X2년 동일기간의 재무제표 작성 여부		비교 표시 여부	
				20X2년 반기		20X2년 반기	
				X		비교 표시 아니할 수 있음	
				○		비교 표시함	

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

(현행) 일반기준 제31장	(최종안) 일반기준 제31장
<p>31.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. 다만, <u>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장 '금융자산·금융부채'의 제2절 '유가증권'의 문단 6.A13을 준용한다.</u></p>	<p>31.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<u>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제6장 '금융자산·금융부채'의 제2절 '유가증권'의 문단 6.A13을 <u>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.</u></p>
<p>31.6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></p>	<p>31.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u>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.</u></p> <p>(1) <u>취득원가.</u> 다만, 제6장 '금융자산·금융부채'의 제2절 '유가증권'의 문단 6.A13을 <u>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.</u></p> <p>(2) <u>제6장 '금융자산·금융부채'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</u></p>

시행일 및 경과규정

(현행) 시행일 및 경과규정	(최종안) 시행일 및 경과규정
<신설>	<p>시행일 및 경과규정(2020. xx .xx)</p> <p>시행일</p> <p>1 <u>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(2020년)에</u> <u>서는 문단 25.7, 31.5, 31.6을 개정하</u> <u>였다. 이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2 <u>이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</u> <u>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, 조기 적</u> <u>용할 수도 있다.</u></p>

관 련 법 규

1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제5조 (회계처리기준)

① 금융위원회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(이하 "증권선물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

1.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
2.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

②~③ (생략)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,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(이하 "회계기준제정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⑥~⑦ (생략)

2.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조 (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(이하 "한국회계기준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1.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
2.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3.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

②~⑦ (생략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공정시장과
연 락 처	02-2100-2695